

정부, 원들러 ISDS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 환수

- 판정 선고 한 달 만에 신속히 환수하여 완승의 의미 빛내 -
-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소송비용 환수액 중 최대(最多) -

- 정부는 오늘 4. 15.(수)* 원들러 측으로부터 국제투자분쟁(ISDS) 절차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전액을 지급받아 환수를 완료 하였습니다. * 4. 10.(금)부터 오늘(4. 15.(수))까지 순차적으로 입금 완료
- 이는 지난 2026. 3. 14.(한국시간) 원들러 ISDS 사건에서 정부가 ‘완승’ 하면서 중재판정부로부터 얻어낸 ‘비용 판정’을 집행하고자, 법무부가 선제적인 변제 요구 (Demand Letter) 등 치밀한 전략을 취한 결과입니다.
 - 결국 ▲중재판정 선고 후 한 달 만에 ▲한국 정부의 역대 ISDS 사건 중 최대 규모의 소송비용을 전액 환수하여 국고를 지켜 냈습니다.
- 이로써 정부는 ① 최초 청구액 약 4,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 상당의 원들러 측의 배상청구를 전액 방어하고, ② 정부의 소송비용 까지 전액 환수하였습니다.
- 정성호 법무부장관은 “이번 소송비용 96억 원 환수를 통해, 원들러와의 법적 분쟁이 대한민국 정부의 완전한 승소로 일단락되었다. 이는 정부가 끝까지 최선을 다하여 얻어낸 귀중한 결과” 라고 평가했습니다.
- 앞으로도 법무부는 관계부처, 정부대리로펌 (법무법인 태평양, Debevoise & Plimpton) 및 전문가들과 함께 원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여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철저히 지켜내겠습니다.

1. 개요

- '26. 3. 14. 02:03 (한국시간) 대한민국은 스위스 국적의 글로벌 엘리베이터 회사 쉰들러 (Schindler Holding AG)가 한-EFTA 투자협정*에 근거하여 '18. 10.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ISDS 사건 (이하 '쉰들러 사건')에서, 대한민국의 전부 승소 판정을 선고받았습니다.

* 대한민국과 유럽자유무역연합(EFTA) 회원국 중 스위스,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간 체결된 투자협정

- 중재판정부는 쉰들러의 손해배상 청구 (최초 청구액 약 4,900억 원, 최종 청구액 약 3,250억 원)를 전부 기각하면서, '패소자 비용 부담 원칙'에 따라 쉰들러 측이 우리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96억 원 (선고일 환율 기준) 및 그 지급 시까지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정하였습니다.

- 정부는 판정 선고 후 5일 만인 3. 19. 쉰들러 측에 '변제촉구 서신' (Demand Letter)을 보내는 등 치밀한 전략을 세워 실행한 끝에, 2026. 4. 10.(금)부터 4. 15.(수)까지 소송비용 약 96억 2,095만 원* 全額을 지급 받아 환수하였습니다.

* 원화 4,114,223,715.63원, 미화 2,457,469.15 달러, 826,692.13 파운드, 105,972.40 유로 (2026. 4. 13.자 환율 기준)

- 이로써 대한민국은 쉰들러 측의 약 3,250억 ~ 4,900억 원의 배상 청구를 모두 방어해 낸 것은 물론, 정부가 중재절차에서 지출한 소송비용까지 전액 회수하였습니다.

2. 주요 경과

※ 이하 한국시간 기준

- 2018. 7. / 10. 쉰들러, 중재의향서 / 중재신청통지 각 접수
- 2020. 1.~2024. 4. 양측, 서면 공방
- 2024. 4. 22.~26. 구술심리 (Hearing, 헤이그)
- 2026. 3. 14. 중재판정 선고 (정부 전부 승소)
- 2026. 3. 19. 정부, 변제 촉구 서신 (Demand Letter) 발송
- 2026. 4. 10.~15 정부, 소송비용 약 96억 원 환수 완료

3. 소송비용 환수 경과: 법무부의 선제적 조치로 조기 환수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의 선제적 환수 조치

□ 정부는 지난 2026. 3. 14. 중재판정 선고 직후, 선들러 측의 조치를 기다리지 않고 법무부를 중심으로 즉시 소송비용 약 96억 원의 집행 절차에 착수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판정 선고 5일 만인 2026. 3. 19. 선들러 측에 ‘변제 촉구 서신’ (Demand Letter)을 발송하면서, ‘판정문상 지급 기한(4. 12.) 내에 즉시 변제하지 않을 경우 4. 13.부터 지연이자를 가산하여 청구할 것이며, 미변제 시 강제집행 절차*에 착수할 수 있음’을 알리며 변제를 촉구하였습니다.

* 선들러 측이 세계 각국에 보유한 재산을 추적한 후, 해당 재산이 있는 국가에 소송을 제기하여 ‘집행 판결’을 받아, 선들러 측 재산에 대한 압류 등 강제집행에 나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 그 결과, 정부는 판정 선고일로부터 27일 만인 4. 10.(금)부터 오늘 4. 15.(금)까지* 정부의 소송비용 약 96억 원 전액을 법무부 지정 계좌로 송금받았습니다. * 해외로부터 외화 및 원화를 송금받는 절차에 수 일 소요

역대 최고의 ISDS 소송비용 환수액

□ 이번에 환수한 금액 약 96억 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간 ISDS 사건에서 청구인 측으로부터 환수한 소송비용 중 역대 최고액입니다.

○ 정부는 '25. 12. 17.에도 론스타 측으로부터 ISDS 취소절차 소송비용 약 74억 원을 승소 한 달만에 전액 환수한 바 있습니다.

【*참고 - 주요 ISDS 소송비용 환수 결정 사례】

○ 론스타 ISDS 정부 측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2025. 12.)

- 2025. 11. 18. 론스타 ISDS 취소절차에서 정부가 완승하여, 취소위원회는 론스타 측이 취소절차 등에 소요된 정부의 소송비용 합계 약 74억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 2025. 12. 17. 정부는 론스타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함

※ 2025. 12. 17.자 법무부 보도자료 ("론스타 ISDS 소송비용 약 74억 원 전액 환수") 참고

○ **중국투자자 ISDS 중재판정 정부 전부 승소 (2024. 5.)**

- 2024. 5. 31. 중국투자자(중국 巨富 OO Min) ISDS 원 중재절차(최초 청구액 약 2조 원)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전부 승소 판정 선고 결과, 정부의 **소송비용 약 49억 원** 및 그 이자 환수 결정이 선고*

* 현재 청구인 측의 취소신청으로, 판정 취소절차 및 소송비용 집행절차 진행중

※ 2024. 6. 2.자 법무부 보도자료 ("중국투자자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판정 선고 - 최초 청구액 약 2조 원, 최종 청구액 약 2,641억 원 상당의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에서, 대한민국 전부 승소 -") 참고

○ **엘리엇 측의 취소소송 각하신청 기각 결정 (2023. 10.)**

- 2023. 10. 18. 엘리엇 측이 제기한 중재판정 취소소송 각하신청이 기각되면서, 영국법원은 엘리엇에게 정부 측 소송비용의 50%에 해당하는 약 **4,370만 원**을 지급하도록 명함

※ 2023. 10. 19.자 법무부 보도자료 ("엘리엇 국제투자분쟁(ISDS) 사건 엘리엇측 취소소송 각하신청 전부기각 결정") 참고

4. 의의 및 향후 계획

선제적 조치로 역대 최고액 소송비용 신속 환수

□ ISDS 소송비용 역대 최고액 환수

- 이번에 환수한 소송비용 약 96억 원은 대한민국 정부가 그동안 수행해 온 ISDS 사건의 비용 환수액 중 가장 큰 규모로, 정부가 분쟁 대응 차원에서 사용한 국민의 혈세를 상대방으로부터 받아 내어 국고 손실을 최소화한 것입니다.

□ 주무부처를 중심으로 실시한 선제적·적극적 환수 조치의 결실

- 판정 선고 직후 ISDS 대응 주무부처인 법무부를 중심으로 하여 선제적인 변제 촉구 서신을 보내는 등, 별도의 강제집행 비용 지출 없이 신속히 환수를 마무리하여 국가 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 통상적인 ISDS 사건에서는, 패소한 투자자가 국가에 소송비용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여, 국가가 해외 법원에서 별도의 ‘판정 집행소송’ 제기 및 압류 등 추가적인 절차에 나아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 그러나 본 사건에서는 선들러 측으로부터 소송비용 전액을 변제받음으로써, 위와 같은 집행 비용과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였습니다.

- ‘패소자 비용 부담’(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의 관철과 국익 보호
 - 국제중재에서는 각자가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결정되는 경우도 있으나, 정부는 이번 사건 공방 과정에서 ‘패소자 비용 부담’ (Costs follow the event) 기준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 그 결과, 중재판정부가 한국 정부의 승소를 명하면서 위 기준을 받아들여 선들러 측에 정부가 지출한 소송비용 전액의 지급을 명하였고, 정부는 이를 끝까지 환수하여 국민의 혈세 낭비를 막고 국익을 실질적으로 보호하였습니다.
- 범정부적 ISDS 대응 역량 입증
 - 법무부를 중심으로 한 정부 대응팀 (국제투자분쟁대응단)은 글로벌 기업을 상대로 한 치열한 법리 다툼에서 승소했을 뿐만 아니라, 판정 선고 후 소송비용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고도의 전문성과 추진력을 발휘하며 국익을 지켰습니다.

향후 계획

- 정부는 이번에 법무부 계좌로 환수한 약 96억 원을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로 귀속 조치할 예정입니다.
- 앞으로도 정부는 관계부처, 국내외 정부대리로펌 및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선들러의 취소소송 제기 가능성 등에 면밀히 대응하고, 국익과 국민의 소중한 세금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부서	국무조정실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윤영주	(044-200-2190)
		담당자	사무관	김태원	(044-200-2192)
담당부서	재정경제부 국제경제과	책임자	과 장	강병중	(044-215-7630)
		담당자	사무관	남궁향	(044-215-7632)
담당부서	외교부 경제협정규범과	책임자	과 장	이송주	(02-2100-7716)
		담당자	사무관	최영재	(02-2100-7719)
담당부서	법무부 국제투자분쟁과	책임자	과 장	조아라	(02-2110-3331)
		담당자	검 사	양준열	(02-2110-4321)
담당부서	산업통상부 통상분쟁대응과	책임자	과장 직무대리	한주실	(044-203-5810)
		담당자	사무관	문희조	(044-203-5956)
담당부서	공정거래위원회 공시점검과	책임자	과 장	문종숙	(044-200-4866)
		담당자	사무관	임채영	(044-200-4865)
담당부서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	책임자	과 장	김미정	(02-2100-2680)
		담당자	사무관	김민수	(02-2100-2691)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공시심사국	책임자	국 장	이동규	(02-3145-8420)
		담당자	팀 장	한만조	(02-3145-8463)



별첨

원들러 ISDS 진행 경과 (판정문상 일자 기준)

주요 절차	일자	주요 내용
서면 공방		
원들러 중재 제기	2018. 10. 10.	원들러 측 중재신청 통지 접수
중재판정부 구성	2019. 1. 13.	의장중재인 Lawrence Shore 정부 지명 Loretta Malintoppi 원들러 지명 Neil Kaplan
1차 준비서면 접수	2020. 1. 24.	원들러, 1차 준비서면(Statement of Claim) 접수
1차 반박서면 제출	2020. 6. 5.	정부, 1차 반박서면(Statement of Defence) 제출
2차 준비서면 접수	2022. 8. 19.	원들러, 2차 준비서면(Statement of Reply) 접수
2차 반박서면 제출	2023. 3. 10.	정부, 2차 반박서면(Statement of Rejoinder) 제출
3차 손해보고서 제출	2023. 12. 7.	원들러, 3차 손해보고서 제출
	2024. 2. 20.	정부, 3차 손해보고서 제출
구술심리 및 심리 후속 공방		
변론요지서	2024. 4. 3.	양측, 변론요지서 (Skeleton Argument) 제출
구술심리	2024. 4. 22.~26.	구술심리 개최 (헤이그)
심리 후속서면	2024. 7. 5.	양측, 심리 후속서면 (Post-hearing Brief) 제출
중재판정 선고	2026. 3. 13.	정부 전부 승소 (한국시간 3. 14. 02:03 접수)